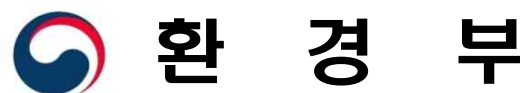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2021. 3. 23.



차 례

I. 목적 및 적용범위	1
II. 근거 법령	1
III. 관리대행업 등록	3
1. 등록	3
2. 변경등록	10
3. 등록말소	14
4. 등록취소	14
IV.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절차	15
1. 관리대행업자 선정	15
2. 계약 체결	21
3. 계약 해지	22
V. 관리대행업자 준수사항 및 교육	23
1.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준수사항	23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24
3. 기술인력의 교육	25
VI.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6
1. 지도점검 주기 및 점검방법	26
2. 주요 점검내용	27
3. 점검 유의사항	27
4. 행정처분 기준	27
5.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30
6. 행정처분 및 통지	31
7.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31

VII. 관리대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	32
1.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관련 법령	32

VIII. 행정 사항	33
1.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33
2. 보고사항	33
3. 보안유지	33

<서식 목록>

1. 제출서류별 요약서	35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37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신청서	38
4. 현지확인 조사서	39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40
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42
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43
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46
9.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47
10.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48
11. 위반확인서	52
1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 실적보고	53
1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	54
1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	55

<참고자료>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흐름도	56
------------------------------	----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 관리대행 능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포함) 및 지도점검 등 행정업무에 활용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등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활용한다.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

II. 근거 법령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항(측정기기의 부착 등)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①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준수사항 등)

-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 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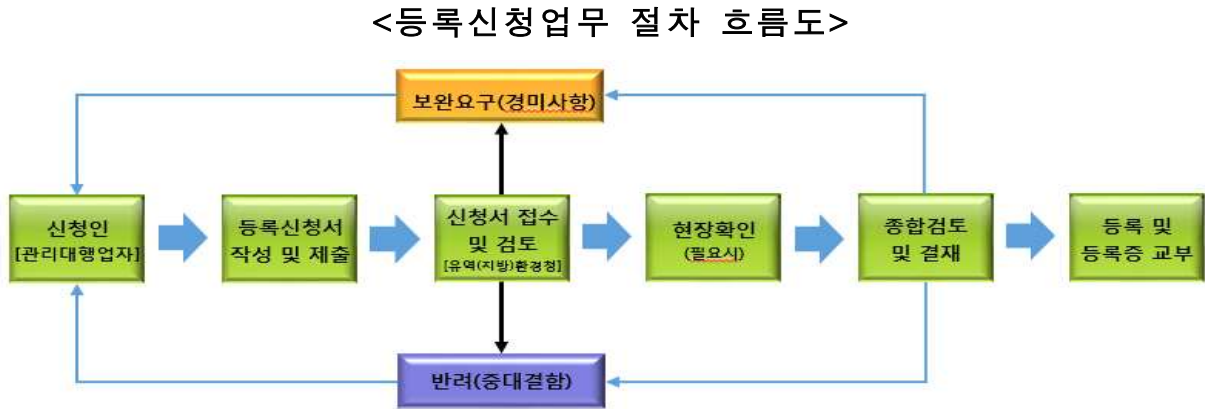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 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Ⅲ. 관리대행업 등록

1. 등록

가. 등록절차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작성 후 사무실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나. 신청자격

- 1) 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7(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2)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결격사유 확인 필요 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등록신청서 작성·검토

1)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서식 1] 제출서류별 요약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세부목록>

제출 서류	비 고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서식3
③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사본 제출
④ 신원증명서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⑥ 기술인력별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사본 제출
⑦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시)	
⑧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2)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3)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4)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택 1
⑨ 시설(실험실 등) 및 장비 보유현황 증빙자료	
1)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거래명세서 2) 실험기기 임차사용 계약서 3) 실험기기 및 장비 공동사용 계약서 4) 수질분야 측정대행 계약서	택 1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가) 신청인(대표자), 기술인력은 기술자격요건(자격증, 경력 등) 및 법인 등기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받기 위해 '[서식2]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신청된 기술인력 중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자는 등록신청서 검토 시 제외한다.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 가) 신청인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서식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록신청서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방법>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개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인에 한하여 ‘e-하나로민원’을 통해 법인등기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e-하나로민원 : <http://www.share.go.kr>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계획서에 필히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 목표 및 능력

- 측정기기 운영관리 목표에 대해 기술한다.
-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시약 및 소모품 교체, 정도검사 준비 등),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역범위, 사업장별 기술인력 편성계획,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계획,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6) 기술인력 증명서류(국가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의2에 따른다.

나) 국가기술자격증

- (1) 신청인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서식1] 제출서류별 요약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e-하나로민원’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1) 신청인은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1] 제출서류별 요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은 기술인력의 근무분야 및 근무기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회사의 폐업·파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발급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표 제2호나목3)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술경력 증명서 발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해당분야 기술자 경력증명 또는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근무확인서(근무기간, 수행업무, 기관직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서 직접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수행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의 담당자로 지정·임명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사업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②측정기기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의 소속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제도 시행일 전까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③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소속으로 직접 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제도 시행일 이전에 측정기기관리대행업체의 소속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경우

- (6) 유역(지방)환경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증빙자료

- 가)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의2 표 제1호에 따른다.
- (1) 신청인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장비 구입 거래명세서 사본, 제품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다만, 수질분야의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용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은 해당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 공동사용계약서 사본, 임차사용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신청인은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1] 제출서류별 요약서'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실험기기 또는 장비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자료보완요구 및 현장확인

1) 자료보완 및 반려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나) 신청인은 보완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항은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신청인이 보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제외한다.

2) 현장확인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등록기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을 방문하여 등록신청한

기술인력 및 측정기기 또는 장비를 확인할 수 있다.

- 나) 측정기기 또는 장비별 정상적인 작동 여부 및 실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관리를 위한 대장 등의 비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현장확인 후 확인내용을 포함한 ‘[서식4] 현지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라) 등록신청서의 기술인력 및 장비 내역과 현장 확인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마. 등록 및 등록증 교부

1) 처리기한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로 ‘[서식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 등록증 교부

- 가) 유역(지방)환경청별 순차적인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예) ○○○○○환경청 제○○호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서식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서식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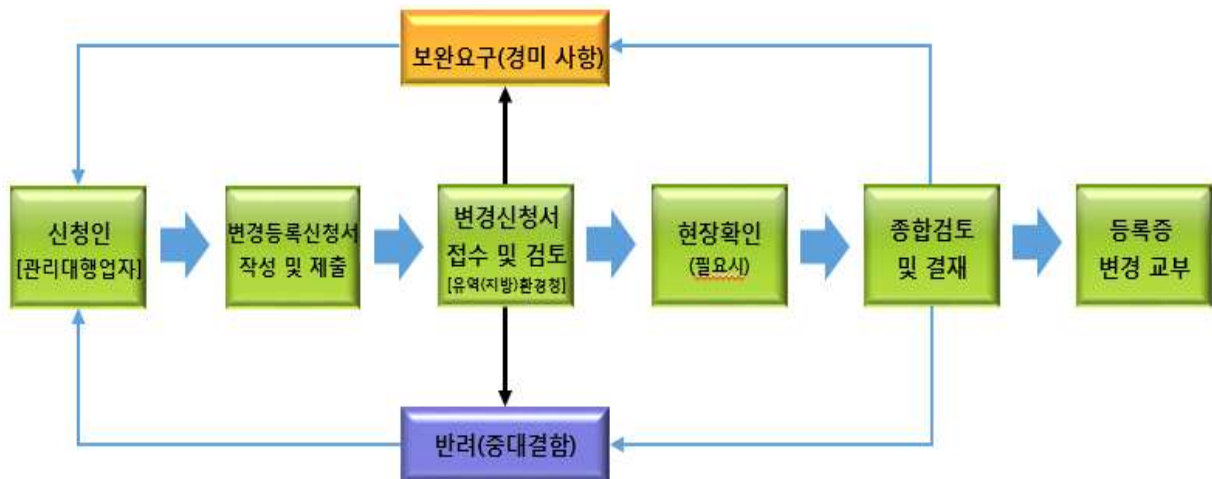
3) 관리대행업 등록현황 관리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관리대행업 등록업체별 ‘[서식7]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를 매 반기 익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변경 등록

가. 변경 절차

<변경 등록 업무처리 흐름도>



- 1) 변경 등록 업무처리는 신규등록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 사항에 관해서만 처리한다.
-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는 아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 서식(본 지침 서식8)을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등록증을 발급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 3) 기술인력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승인 완료 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관리대행 신규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상호명칭의 변경

1) 구비서류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2) 검토사항 및 조치

- 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아래와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 나) '[서식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뒷면의 등록변경 사항란에 동일하게 기재하여 기록·관리한다.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인자
20** . ** . **.	(주) ○○○으로 상호 변경	○○○ (인)

다. 대표자 변경

1) 구비서류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다)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 마)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2) 검토사항 및 조치

- 가) 신원증명을 통하여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아래와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다) ‘[서식7]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뒷면의 등록변경 사항란에 동일하게 기재하여 기록·관리한다.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인자
20**.*.*.	대표자 변경(성명 : 홍 길 동)	○○○ (인)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1) 사무실(본사)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 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다)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증 원본

3) 검토사항 및 조치

가) 사무실 확보 여부를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한 소유권과 임차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다음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라) ‘[서식7]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뒷면의 등록 변경사항란에 동일하게 기재하여 기록·관리한다.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인자
20**.*.*.	사업장 주소 변경 (00시 00구 00로 00)	○○○ (인)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1) 구비서류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나) 실험실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차사용계약서 사본)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2) 검토사항 및 조치

- 가) 실험실의 소재지와 실험 분석장비의 정상 측정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다음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 다) ‘[서식7]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뒷면의 등록 변경사항란에 동일하게 기재하여 기록·관리한다.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인자
20**.**. **.	실험실 주소 변경 (00시 00구 00로 00)	○○○ (인)

바. 기술인력 보유현황 변경

1) 구비서류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나) 변경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증빙 서류 등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기술인력등록 관련)와 동일하게 제출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원본

2) 검토사항 및 조치

- 가) 변경된 기술인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기술인력 변경이 적정한 경우에는 ‘[서식6] 기술인력 등록 확인증’을 재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서식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뒷면의 등록 변경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기록·관리한다.

<작성예시>

일 자	내 용	확인자
20**.**.**, **.	기술인력 변경(총 00명 → 00명 변경) - 변경내용(삭제: 김00 1명, 추가: 이00 1명)	○○○ (인)

3. 등록 말소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동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 말소 신청을 하려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2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서식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래 사항을 관보나 유역(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나)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다) 등록말소·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

4. 등록 취소

- 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시 등록을 취소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 3)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38조의7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등록대장에 등록취소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말소와 같이 관보나 유역(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IV. 측정기기 관리업무 대행절차

1. 관리대행업자 선정

가. 선정방법

-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제시된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기술입찰을 시행(2단계 입찰)하거나 또는 제4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등의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에 따라 낙찰자와 물품공급사·제조사 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미체결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물품공급사·제조사와 단가 또는 총액을 정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
- 4)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배출사업장 또는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나. 업체선정

-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 과업명
 - 나) 과업개요
 - 다) 관리대행의 목적

라) 과업기간

마) 용역 참가자격

-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득한 자
- (2) 관리대행 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자격이 필요할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바) 관리대행의 대상 및 과업 범위

- (1) “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19.3, 환경부)”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수질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 과업 수행방법

- (1) 계획점검, 긴급점검에 대한 세부과업내용, 작업완료 보고,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해 작성한다.
- (2) “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19.3, 환경부)” 별표 제1호(표준 점검시간표)를 참고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제출서류(실시계획서 제출)

자) 대가산정 및 비용정산

- (1) 수질TMS 위탁용역의 대가는 “정보통신 표준품셈 13-7-7 수질원격감시 시스템(TMS) 점검”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적산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등) 점검 또는 측정기기 정확도 확인을 위한 수질분석 등 표준품셈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을 과업범위로 정한 경우, 별도의 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에 따른 환경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능사의 기술자 노임단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따른다.
-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시약제조 등은 위탁비용에 포함하여 산정(측정기기부착사업자와 물품공급사간 별도의 물품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이외 측정기기부착사업자와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수행된 부품교체, 특별점검 등의 비용은 용역 완료 후 별도 정산한다.

- (5)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19.3)”에 명시된 점검횟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급성을 다루는 비상점검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예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점검(정보통신 표준품셈)

13-7-7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점검				
공 정 별		단 위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능사
정류조 청소 및 점검		대	0.07	0.07
데이터로거 점검		“	0.08	0.08
측 정 기 기	총질소(T-N)	“	0.60	0.60
	총인(T-P)	“	0.60	0.6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0.66	0.66
	부유물질(SS)	“	0.18	0.18
	수소이온농도(pH)	“	0.18	0.18

[해 설]

- ① 총질소 및 총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점검내용은 반응시약 상태 확인 및 교체, 각종튜브 및 필터확인, 연결튜브 상태확인 및 교체, 반응장치 확인, 정량펌프 및 계량장치 확인, 검·교정 작업 등을 포함.
- ② 부유물질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기 점검내용은 연결부위 상태확인, 센서(또는 검출부) 상태확인, 검·교정 작업 등을 포함.
- ③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정도검사(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는 별도 계상.
- ④ 관제센터의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점검은 “13-8-1 네트워크 장비 점검” 품셈을 적용

차) 기술인력의 확보

카) 계약의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관한 사항

타) 기타 필요사항(보안책임, 대가의 지급, 휴일 및 야간작업 등)

6) 기술평가방법

-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사업수행 능력, 계획 및 관리,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다. <표 1>
- 나)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등급, 교육훈련 이수, 용역수행실적 및 재정상태로 구분한다. <표 2>
- 다)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수행 계획과 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그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 라) 상대평가의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적용한다. <표 3>
- 마) 공동도급의 경우 절대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별로 평가 후 지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며, 상대평가는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바) 가·감점은 대행능력평가, 신규기술자 고용, 법령위반 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능력, 계획 및 관리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산정한다.
- 사)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가·감점		
사업수행 능력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15	50	절대평가
		나. 교육훈련	10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15		
		나. 재정상태	10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50	상대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3	+5	절대평가
	2. 신규기술자고용		+2	~	
	3. 법령위반		-5	-5	

<표 2> 사업수행 능력평가 및 가·감점 세부기준(절대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인력	[25]																											
	가. 기술등급	(15)	<p>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p> <p>-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p> <p>※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p> <p><기술등급 배점표></p> <table border="1"> <tr> <td>평균 점수</td> <td>1.65초과</td> <td>1.65이하 1.5초과</td> <td>1.5이하 1.25초과</td> <td>1.25이하 1.0초과</td> <td>1.0이하 0.75초과</td> <td>0.75이하</td> </tr> <tr> <td>배점</td> <td>15</td> <td>14</td> <td>13</td> <td>12</td> <td>11</td> <td>10</td> </tr> </table> <p><기술등급 점수></p> <table border="1"> <tr> <td>기술사· 특급</td> <td>고급</td> <td>중급</td> <td>고급숙련</td> <td>초급</td> <td>초급숙련</td> </tr> <tr> <td>2.0</td> <td>1.75</td> <td>1.5</td> <td>1.25</td> <td>1.0</td> <td>0.75</td> </tr> </table>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15	14	13	12	11	10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75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15	14	13	12	11	10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75																								
나. 교육훈련	(10)	<p>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대한 평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p> <p>-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p> <p>*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p> <p>-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p> <p>-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p> <p>-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p> <p>※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p> <p><교육훈련 배점표></p> <table border="1"> <tr> <td>평균 점수</td> <td>1.0</td> <td>1.0미만 0.9이상</td> <td>0.9미만 0.8이상</td> <td>0.8미만 0.7이상</td> <td>0.7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10	9	8	7	6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10	9	8	7	6																								
2. 참여업체	[25]																												
가. 수행실적	(15)	<p>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용역 수행실적 평가</p> <p>-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p> <p>※ [산정방법] (A₁+A₂+...+A_n) / 3년</p> <p>* A_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p>																											

		<p><수행실적 배점표></p> <table border="1"> <tr> <td>수행 실적</td>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5</td> <td>14</td> <td>13</td> <td>12</td> <td>11</td> </tr> </table>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배점	15	14	13	12	11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배점	15	14	13	12	11																																							
나. 재정상태	(10)	<p>재정상태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발주업체가 선정한 방법으로 평가</p> <p>- ①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자기 재무비율></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00% 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수</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p>- ②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 colspan="5">신용등급</td> </tr>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0</td> </tr> </table>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0	9	8	7	6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0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0	9	8	7	6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10	9	8	7	0																																							
가 · 감 점	1. 대행능력평가	(+3)	입찰공고 전년도 측정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에 부여																																									
	2. 신규기술자고용	(+2)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3. 법령위반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표 3>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평가 참여업체별 평가등급 배분(상대평가)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2. 계약 체결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관리대행 계약시 계약내역에 따라 공동도급(2개사 이내)은 허용하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재대행은 금지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관리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관리대행의 목적

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다) 관리대행금액 및 계약기간

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관리대행 계약내역 및 계약 변경(해지) 사항

바) 관리대행 계약의 손실보상 및 특약 사항

사)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지급 감액 및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 외 이면 계약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 해지

가.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측정기기관리 대행업자는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2) 파산, 부도, 해산 및 영업정지 등 경영상의 사유로 과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3)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V. 관리대행 준수사항 및 교육

1.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준수사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 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 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를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를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기술인력의 교육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과정명 :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 과정

- 1) 최초교육 : 기술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국립 환경인재개발원, (사)한국상하수도협회로 하며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 1) 교육내용에는 측정기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실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실험분석 및 실험실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이 교육이수자 현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VII.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 지도점검 주기 및 점검방법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나.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지도·점검 우선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1) 최근에 행정처분 및 고발된 업체
 - 2)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 3) 기타 측정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잘못된 측정자료 오류 등)
- 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관련 부서장은 점검대상 업체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라. 지도점검 업무의 수행은 1개조(2명 이상)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마. 공무원이 지도점검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점검목적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바. 지도점검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업체 관계인의 입회하에 ‘[서식10]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 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서식11] 위반확인서’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아.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 등을 작성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주요 점검내용

-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준수여부(장비, 기술인력 등)
-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대여 여부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의 허위 유무
- 라.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 마.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점검·관리사항에 대한 기록보관 등)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점검 유의사항

- 가. 점검행위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나.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처분 기준

-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별표14의3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 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	등록 취소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가) 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일 이상 갖추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4)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8조의9제1항제3호	등록 취소			
5) 법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7호				
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등록 취소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1개월	3개월		
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다)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6)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2호	등록 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의9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나.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0의2. 법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기 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타인에게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본 업무 상으로는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양태로 나타남)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관리대행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5.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가. 위반사실의 확정

- 1)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따른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 2)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한다.
- 4) 기타 행정처분 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5)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 1)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다)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2)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행정처분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다)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행정처분 및 통지

- 가.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 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라.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동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처분 됨을 명시한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에서 그 처분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마. 아울러,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7. 등록증 및 등록대장 정리

- 가. 영업정지 시에는 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처분사항란에 기재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한다. 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날인을 한다.
 - 나. 경고 처분시에는 등록증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에만 기재한다.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은 양식을 같이 사용하고 분철하여 관리함

Ⅶ. 관리대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

1.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

-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II. 행정사항

1. 지침의 적용

- 가. 본 지침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나. 본 지침 중 관리대행업자 선정(IV. 1.)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 개정 이후 발주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 등록관리 및 보고사항

- 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시 등록기관[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다른 등록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나. 민원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업체 명단을 요구한 때에는 업체 명단을 일괄 안내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업체 명단을 활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관리대행업자→유역(지방)환경청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관리대행 및 점검 관련실적 보고[유역(지방)환경청장→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서식12] 지도.점검 실적보고서」 및 「[서식14]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익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안유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관리대행 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 목록

1. 제출서류별 요약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등록말소 신청서
4. 현지확인 조사서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6.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확인서
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9.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10.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11. 위반확인서
1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 실적보고
1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
1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

[서식 1] 제출서류별 요약서

제출서류 세부목록 요약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기술인력수
		본사	실험실	

제출 서류	제출여부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③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④ 신원증명서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⑥ 기술인력별 국가기술자격증	
⑦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해당시) 경력증명서	
⑧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2)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3) 국민연금(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 4)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⑨ 시설(실험실 등) 및 장비 보유현황 증빙자료	
1)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거래명세서 2) 실험기기 임차사용 계약서 3) 실험기기 및 장비 공동사용 계약서 4) 수질분야 측정대행 계약서	

※ '제출여부'란에 '○'로 표기하여 첫 페이지에 첨부

□ 기술인력 요약서

순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자격증명 (취득일자)	자격증 번호	경력		
						기간	기관명 (現·前근무지)	기관 연락처

□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요약서

유형	계약기간 (해당시)	보유 측정기기 또는 실험장비					비 고
		pH	SS	TOC	T-N	T-P	
구매,임차,공동 사용,대행 중 해당경우	2019-10-01 ~ 2022-09-30	0	0	0	0	0	
측정 항목	측정기기					비 고	
	제조사	모델명	측정방식	제조연도			
pH							
SS							
TOC							
TN							
TP							

[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과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38조의2 및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격요건에 따른 경력·자격사항
수집·이용 목적	등록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확인(조회 및 검증), 등록 여부의 결정,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동의일로부터 관리대행업 등록 및 기술인력등록 해지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합니다. 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등록취소의 경우, 종료 후부터 2년간 보유·이용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검증이 어려운 경우, 관리대행업 또는 기술인력 미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00월 00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현지확인 조사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별표 8의2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조사자	소 속 :	직급 :	성 명 :
	소 속 :	직급 :	성 명 :

- 아 래 -

1. 종합의견

- (1) 기 술 인 력 :
- (2) 장 비 :
- (3) 기 타 :

[서식 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앞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p>「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유역(지방)환경청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orange;"> <p>직인</p> </div> </div>	

210mm×297mm[백상지120g/㎡]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자격증 (취득일자)	경력
					기간
1					
2					
3					
4					
5					
6					
7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대장

(1/3)

상 호(업체명)		(전화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 고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E-mail	/
	주소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기타 참고사항				

[서식 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_____)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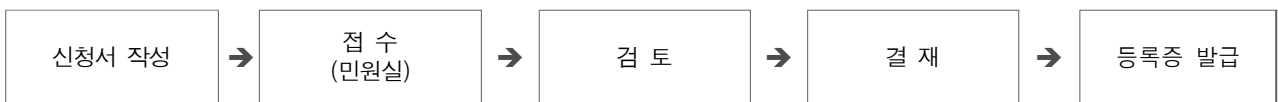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대행업 담당부서)

4. 관리·운영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등록 사항	등록기준(장비, 기술인력 등)의 준수 여부		
	등록증을 임대하거나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도록 방조하였는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요건 발생 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적용 여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험 및 분석 등 실시 여부		
	시약 및 표준용액(교정용액) 등을 규정대로 제조·사용하는지 여부		
	표준용액(교정용액)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정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등 준수여부	관리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정 및 고시 등 준수하였는지 여부		
유지관리 결과 기록 및 보관	유지관리(점검 및 교정 등) 결과를 '점검·관리 사항' 서식에 작성하여 적절히 보관하는지 여부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여부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관리대행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측정기기 및 장비	측정기기 및 장비의 소모품 등 부품 구비 여부		
	측정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측정기기 및 장비는 실제검사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사항	대행계약 내용 준수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행정처분, 기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대행실적 보고 등 기한 내 이행하였는지 여부		
	상기 외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건의사항(관리대행업자)

6. 점검자 의견

7. 첨부 :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서식 1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지도·점검 실적보고

○○년도 지도·점검 실적보고

연번	상호(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점검일	위반내용	조치일	조치사항	비고

※ Excel로 작성

[서식 13]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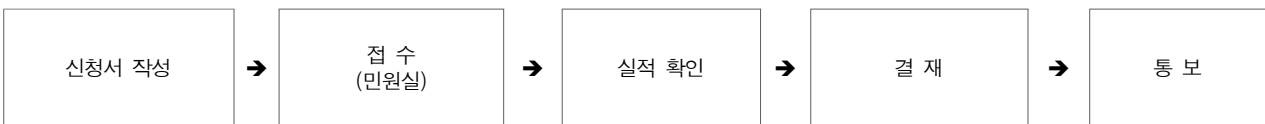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

(○○년 12월말 기준)

연번	상호(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구분 (등록·변경)	전화번호	비고

※ Excel로 작성

참고자료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흐름도

